

특별계약 교원 규정

1998. 3. 6. 제정

2017. 10. 23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「교원인사 규정」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계약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1.29.)

제 2 조 (특별계약 교원의 종류) ①이 규정에서 '특별계약 교원'이라 함은 본교 「교원인사 규정」 제2조제3항에 따라 본교와의 특별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 (개정 2014.1.29.)

②특별계약 교원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겸임교원(겸임교수)과 초빙교원 등으로 구분하며, 초빙교원의 종류에는 초빙교수, 객원교수, 연구교수, 특임교수, 리서치 펠로우(연구교수),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있다.

(개정 2017.10.23.)

1. 겸임교수 : 국가기관, 공공단체, 연구기관, 산업체 등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(개정 2017.10.23.)
2. 초빙교수 :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(개정 2017.10.23.)
3. 객원교수 :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(개정 2017.10.23.)
4. 연구교수 : 연구소(원), 부속기관, 연구책임자,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
5. 특임교수 :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
6. 리서치 펠로우(연구교수) :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
7. 산학협력중점교수 :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

제 3 조 (임용 및 재임용) ①특별계약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은 소속 기관장 또는 연구처장의 추천과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한다.

②특별계약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된다.

③특별계약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특별계약 교원 규정

④리서치 펠로우(연구교수)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기간은 1년 이내의 단위로 한다.

⑤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교수, 리서치 펠로우(연구교수)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의 임용기간은 해당 연구비의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4 조 (복무) ①특별계약 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, 연구, 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특별계약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특별계약 교원의 복무에 대하여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며,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전임교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④특별계약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, 대학(원)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.

⑤특별계약 교원은, 겸임교수를 제외하고,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처우) ①특별계약 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초빙교수 :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초빙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강의를 담당하는 초빙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, 보수는 교비,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.

2. 객원교수 :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객원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강의를 담당하는 객원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, 보수는 교비,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.

3. 겸임교수 :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한다. 보수는 교비,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.

4. 연구교수 :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보수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 보수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등 외부기금에서 지급하며,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5. 특임교수 : 특임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. 보수는 교비,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.

6. 리서치 펠로우(연구교수) : 리서치 펠로우(연구교수)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보수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 보수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등 외부기금에서 지급하며,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7. 산학협력중점교수 :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.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책사업비 또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급한다.

②특별계약 교원에게는 교육, 연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 6 조 (신분보장과 징계) ①특별계약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, 징계처분에 의하

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,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 소속기관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특별계약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「교원인사 규정」의 면직, 휴직, 직위해제,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 (개정 2014.1.29.)

제 7 조 (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및 재임용 특칙) ①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및 재임용은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한다.

②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채용할 전공분야의 특성상 공개채용이 불가하거나 우수인력 확보 등의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③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, 산업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.

④총장은 본교 전임교원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교 전임교원의 신분은 유지되며, 산업체 근무경력은 요구되지 아니한다.

⑤제3항에서 말하는 '산업체 경력'이라 함은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,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.

1.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
 - 가.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 - 나.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,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 2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 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 3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- ⑥소속기관장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실적 및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 8 조 (산학협력중점교수 업무 특칙)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의 업무에 종사한다.

1. 산학협력 연구
2. 산학협력 교육
3. 창업 및 취업지원
4.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
5. 산학협력과 관련한 국책사업 참여 및 진행
6. 기타 산학협력에 관련된 업무

제 9 조 (산학협력중점교수 복무 특칙) ①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은 각 대학(원)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(원), 부속기관, 산학협력단 등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.

특별계약 교원 규정

②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는 계약에 의한 연봉제로 하며, 보수 외에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교 교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,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수행 관련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
⑤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육, 연구, 창업 및 취업 지원, 국책사업 수행 등 산학협력 업무에 집중하여야 하며, 원칙적으로 타 기관에 겸직할 수 없다.

⑥산학협력중점교수의 한 학기 강의 책임시수는 4학점 이내로 한다.

제 10 조 (기타 사항)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8. 3. 6. 제정)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0. 17. 개정)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1. 7. 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구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(2003. 11. 7 개정전의 규정)에 의거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조건에 따라 인사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원의 지위를 다시 부여한다. 다만, 당해 교원이 구 규정하에 근무한 기간은 다시 부여된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4. 3. 2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12. 21. 개정)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25. 전문개정)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. 29. 개정)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10. 23. 개정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